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었던 한시정원 5명(6급 2명, 7급 2명, 8급 1명)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감축하는 내용으로 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3. 6. 00,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급 공무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)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6. 00. ~ 6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 후단 중 “76명을”을 “80명을”로 한다.

제39조제6항을 삭제한다.

별표 11 제5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)은 별표 3과 같다.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<u>76명</u> 을,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.	제36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80명</u> 을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⑪ (생략)	② ~ ⑪ (현행과 같음)
제39조(한시정원) ① ~ ③ 삭제	제39조(한시정원)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삭제	
⑥ <u>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</u>	<u><삭 제></u>

<u>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</u> <u>년 7월 6일까지 별표 11에 따른</u> <u>한시정원을 건강보험분쟁조정</u> <u>위원회 사무국에 둔다.</u> ⑦ ~ ⑨ (생략)	⑦ ~ ⑨ (현행과 같음)
---	-----------------------